제24차 IMDRF 정기총회 결과보고서

('23.10.20(금), IMDRF 지원사무국)

□ 개요

○ 일 시 : 2023.09.25.(월)~26.(화) 08:30~18:30

O 장 소 : InterContinental Hotel, 독일, 베를린

O 참석자 : 우선형 팀장

-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이정림 부장, 첨단의료기기과 권영미 주무관, 이윤주에디터,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이충근 주무관, 의료기기정책과 조아람 사무관
- (한국 연자 및 패널리스트) 웰트 이유진 이사, 에임메드 임진환 대표
- IMDRF 규제당국자, 국내·외 의료기기 산업계 관계자 등
- 목 적 : 특별 규제경로(specialized regulatory pathways)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주제로 규제당국의 관련 규정 적용 현황을 알아보고 산업계가 바라 보는 현황과 의견을 공유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찰

□ IMDRF/이해당사자(DITTA-GMTA) 합동 워크숍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고
08:30~08:45	- 환영사	Jesus Rueda Rodriguez 국제업무부장 (MedTech Europe)
08:45~09:05	- 세션 1: IMDRF foundational pathways 개요 · 아일랜드 규제당국 (HPRA) · 해외 산업계 (쿡메디칼)	
09:05~11:40	- 세션 2: 특정 환자군을 위한 희소 의료기기 · 아일랜드 규제당국 (HPRA) · 일본 규제당국 (PMDA) · 해외 산업계 (Elekta) · 한국 규제당국 (MFDS) · 해외 산업계 (Abbott) · 미국 규제당국 (FDA) · 해외 산업계 (OrthoPaediatrics) · 해외 학계 (LMU 대학병원) · 호주 규제당국 (TGA) · 포루투갈 규제당국 (IMFARMED) · 해외 산업계 (Materialise) · 독일 규제당국 (Germ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 해외 산업계 (Velsera)	
11:15~11:40	- 세션 2 : 화소 의료기기 패널 토론 - 화소 의료기기 규제 및 관리 개선 방안	

11:40~13:20	- 세션 3: 혁신 의료기기 - 미국 규제당국 (FDA) - 캐나다 규제당국 (Health Canada) - 싱가포르 규제당국 (HSA) - 해외 산업계 (애보트) - 한국 산업계 (월트) - 해외 산업계 (Edwards Lifesciences) - 해외 산업계 (Erbe Elektromedizin) - 브라질 규제당국 (ANVISA) - 해외 산업계 (로슈) - 해외 산업계 (지멘스 헬시니어스) - 해외 산업계 (필립스) - 해외 산업계 (GE 헬스케어)	
13:20~14:20	- 휴식시간	
14:20~14:45	- 세션 3 혁신 의료기기 패널 토론 - 혁신 의료기기 규제 및 관리 개선 방안	
14:45~16:25	- 세션 4: 혁신을 촉진하는 regulatory toolboxes · 영국 규제당국 (MHRA) · EU 규제당국 · 해외 산업계 (필립스) · 해외 산업계 (Dräger) · 중국 산업계 (NMPA) · 영국 규제당국 (MHRA) · 해외 산업계 (메드트로닉) · 해외 산업계 (애보트) · 해외 산업계 (로슈)	
16:25~16:30	- 폐회사	Andrzej Rys IMDRF 의장

□ 이해당사자포럼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고
09:00~09:20	- 환영사	Andrzej Rys IMDRF 의장
09:20~13:00	- 세션 1: IMDRF 회원국별 규제 최신 현황 업데이트 호주 규제당국 (TGA) 보라질 규제당국 (ANVISA) 캐나다 규제당국 (Health Canada) 중국 규제당국 (NMPA) EU 규제당국 (일본 규제당국 (MHLW) 성가포르 규제당국 (HSA) 한국 규제당국 (MFDS) 영국 규제당국 (MHRA) 미국 규제당국 (FDA) 아르헨티나 규제당국 (ANMAT) 스위스 규제당국(Swissmedic) 세계 보건 기구 (WHO)	
13:00~13:50	- 휴식시간	
13:50~15:10	- 세션 2: 이해당사자 포럼 · 아프리카 규제당국 (AMDF) · 해외 협단체 (APEC) · 해외 협단체 (GHWP) · 해외 협단체 (DITTA) · 해외 협단체 (GMTA)	
15:10~16:10	- 세션 2 플래시 패널 - 회원국 및 산업계의 UDI 실행 경험 및 우수 사례 공유	
16:10~16:15	- 폐회사	Andrzej Rys IMDRF 의장

붙임 1

제24차 IMDRF-GMTA 합동 워크숍 사진





한국인 연자(웰트 이유진 이사) 발표





식약처-IMDRF 지원사무국-한국인 연자 단체 사진

KMDIA-글로벌 산업계 담당자들 단체 사진





붙임 2

제24차 이해당사자 포럼 사진

한국 식약처 발표







플래시 패널 한국인 참가자(이충근 주무관) 사진

플래시 패널 한국인 참가자(임진환 대표) 사진





산업계 MC 공개회의 사진

GMTA 회의 사진





붙임 3 제24차 IMDRF-GMTA 합동 워크숍 산업계 내용 및 의견 정리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Donal O'Connor (HPRA) 발표	Principle of potential benefit이라는 개념이 흥미
		로움. 전체 유효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1. 희소의료기기 정의하는데 challenges 있음	고. 환자 모집도 어렵고 사용 사례도 적은 예에
	- (정의) 희귀(희소) 질병 또는 질환 치료나 진단하는데 ben	서 일부의 유효성만 입증돼도 허가 받을 수 있
	efit이 있어야 하는 의료기기	으면 좋겠음
	- 희귀 질병 자체를 정의하기가 힘듬	"Off-label is not a dirty word". 즉 off-label
		에 대한 evidence도 버릴게 아니라 잘 활용할 수
Devices intended	2. 규제 개발도 challenges 있음	있는 방안 마련되면 좋겠음
for specific		EU MDR conversion 에 관련한 경제적 비용 및
patient populations	3. 임상시험 힘듦	전환 기간에 따른 의료기기의 공급 문제와 연결
	즉, 안전성, 성능 보장되어야하는데 고위험이고 이전에 사용	되어 있고 PMS/PMV 중심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되지않은 의료기기여서 이와 같은 사항을 평가하는데 어려	서 RWE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션이었음
	움 있음	
		한국 갱신제도도 사실상 EU MDR의 Product life
	4. 희소의료기기 규제 예	cycle management 하의 state of the art approa
	- 미 FDA의 specialized pathways: potential benefit에 대한	ch와 유사한데, 유럽의 규제 system and infrastr
	원칙,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평가하는 것 => 이것	ucture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연기(delay)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이 먼저 정의되고 정해져야 희귀의료기기로 지정 가능 - 유럽 Medicinal products model: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대한 incentive 정의, 규제 평가도 유사한지 확인 - MDCG ODTF 임상 평가 가이던스: 희소의료기기 사용 대상 및 하위 대상 누구인지 정의하고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 이때 의료기기의 적응증과 사용목적 확인 필요. 임상증거 및 평가 시, methodology 연구 필요하며 제품의 전주기 leverage 할 필요함. RWE 최대화로하고 레지스트리, 오프라벨 사용 관련 사항도 확인 필요 상대적으로 스몰 그룹의 환자에게 benefit이 있는지 확인필요	및 legacy devices의 리뷰 guideline 을 재검토하는 부분 등이 뭍어나오는 세션으로 보였음. 청중의 질문들도 그 부분에 대한 pain point 를 말하고 있었음. 우리도 다른 IMDRF 회원국이 인정하는 과학적근거에 기반하면서도 초기 안유자료의 한계를인정하면서 시판 후 자료를 유용하는 실용적 접근을 감안하면 좋을듯 하고, 그 부분은 PMS/PMV data가 중점이 되는 미국 유럽의 트랜드를 감안한 '현장 사용에서 안전성이 검증된'의료기기의 지속적인 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음
	5. IMDRF의 희소의료기기 support - what can be harmonised, what can be improved 에 대해 IMDRF에서 고민해왔음.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base로 두자.	이 부분에서 TGA의 의료기관에 대한 reporting requirements 강화는 product lifecycle managem ent 측면에서 detect ability 를 높여서 RWE 유 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으로 보임 회소의료기기 세션에서 의료기기 부족(shortage)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일본 PMDA 발표 회소의료기기 지정 기준(criteria) 소개 1. Small number of patients 2. High medical needs 3. High probbility of successful development 회소의료기기 R&D 지원 인센티브 소개 1. Grant-in-Aid for R&D Expenses 2. Administrative and scientific advices 3. R&D Tax deduction 4. Priority Review 5. Premium for medica device pricing 일본에서 지정된 희소의료기기는 32개, 허가 받은 제품은 22개임 한국 식약처 발표 희소 또는 긴급의료기기 공급 정책 소개 한국의 긴급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공급 단계(5단계) 안내	에 대한 내용이 적었음. 한국과 leo의 발표 등에 서는 shortage 언급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shortage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텐데도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의아했고 leo의 발표 내용에 도 언급된 이제는 단순히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규제당국이나 부서 만의 협력만 필요한 것이 아 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모든 기관, 부처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해외 산업 계도 동의함.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글로벌 산업계 발표	
	(Leo) MDD에서 MDR 전환이 희소의료기기와 의료기기 부족과 관련있음 - 임상증거, 어린이 의료기기 적응증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발됨 -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 증가 등 => 의료기기 부족 현상발생	
	RWE, pre-market investigator initiated studies 볼 필요가 있음 레거시 디바이스의 orphan indication avoid 필요함 관련 기관 및 부처 간의 협업, 조화 필요함을 강조	
	(April_Abbott) HUD 의료기기 지정에서 안전성 평가 및 확인, probable be nefit 확인하는 것이 핵심임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Pediatric devices	
	1. 미국에도 소아사용 의료기기 허가 규제 및 요건에 challenges 있음 보험 수가 적용에 있어서도 challenges 있음. => 규제당국, 산업계, 의사 모두 포함된 민-관 협력 필요	
	Kenneth Cavanaugh (FDA) Pediatric devices업체들은 financial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 I ncentivize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임 pediatric only marketing submission의 경우 submission fee 면제	Kenneth Cavanaugh (FDA) NuMED stent 예시. Academia sponsor 연구자 주 도 임상 결과로도 허가한 사례 인상적임
	2. clinical investigation, evidence 중요함 어른 및 어린이 대상으로 임상 하여 적절한 line 찾을 수 있음 시판후 사후관리(surveillance) 중요	Cordis pulmonary stent 예시. 역시 pivotal 임상
	관련 협단체 노력 뿐만아니라 규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 분에서도 함께 노력 필요함을 강조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Joel Batts (Orthopediatrics)	
	소아용 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지 않으면 개발을 위한 skill s	
	et이 영원히 발달되지 않을 것임. => 즉, 소아용 개발을 위	
	한 incentivize 강조	
	"jerry-rigged" 라는 개념. 성인용을 어쩔 수 없이 임시방	
	편으로 소아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적절하지 않은 사이즈, 용법을 소아에 그대로 적용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놀라움	
	Challenging reimbursement landscape	
	악순환: 급여 안되면 -> 개발 안되고 -> 투자 안되고 -> 개	
	발 안되고	
	하나의 대안으로 성인 결과를 소아에 추론하는 대안 제시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3. IMDRF에 제안 "소아 및 희소의료기기" 다루는 실무그룹 개발 및 관련 work item 실행하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컨버전스 및 조화 방안 마련 및 실행 IMDRF에 health care professionals 포함시켜 글로벌 규제 방안 마련에 임상부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길 바람	
	[Panel Discussion]	
	hurdles, challenges 무엇인가 이게 키 이슈였음. 희귀 의료기기에 있어서 regulatory challenges 무엇? - 당연히 clinical evidence requirements. uncertainty에 대한 가이던스 만드는 것 어려운 것은 알지만, clinical evidence guidance 게속해서 만드는 것이 필요함. IMDRF든 ISO든 해 당 concept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challenges 극복이 필요 evidence에 있어서 불안정한 evidence라더라도 이를 잘 lev erage할 수 있는 tool을 개발필요. 규제에 있어서 flexibility 필요.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소아용 의료기기 시판과 관련하여 challenges? HDE pathways transparency, predictability => 전형적인 evidence 아닐 경우 규제자들은 뒤로 물러서있고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 clinical evidence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규제자와 신청자(산업계)계속 대화하고 관련된 증거 설명과 potential benefit 보여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 그 과정(pathway)가 중요함	
	regulatory consideration, global strategies consideration이 뭔지 파악을 하고 이를 최대로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협업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	
	clarification of regulatory concept => transparency와 연결 regulatory concerns(acceleration) => review framework 개발과 연결, 국내외 데이터 이용도 중요 incentives provision => subsidies, premiums 등 제공을 통해 incentive provision 필요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뉴 컨셉이어서, 각 경험을 바탕으로 대화, 협업 필요 consistency 중요하나,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님. 협업, 대화 등 필요.	
	design envelope 각 파트별 협업 필요	
	희귀, 소아용 의료기기 주제로 오늘 논의한 사항 imdrf 내에서 개선 및 발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모두 동의	
	(호주)	Sally Prawdzik (Health Canada)
	1. 발표 키워드: point of care	"Advanced Therapeutic Products (ATPs)": 7]
	관련 내용으로 survey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관련 규	
	제가 있는지도 모름	한 새로운 분류로 해석됨. 새로운 제품을 기존
	이번 survey를 통해서 관련 규제기관, 규제자, 전문가들과	분류에 억지로 끼워넣기 보다 새로운 제품군으
Innovative medic	함께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가능토록함 surve	로 분류한 점이 신선했고, 꼭 필요하다고 보임
al devices	y 아젠다 관련 논의도 함	이번 미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였음
	2. 환자 안전성 중요	PCCP에 대해서:
	호주 imdrf framework, document 바탕으로 진행	Ver 1 승인 받은 이후 post-market 단계에서 ve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r 2를 승인 받을 때 ver 3에 대한 계획이 다 나
		와 있는 경우 매우 도움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Infarmed)	현실적으로 ver 2를 roll-out한 후에나 ver 3에
	EU MDR ==> 3등급 customized devices	대한 가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PCC
		P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보임
	imdrf pmd 문서에서 pmd 정의함 (n49)	
	N58에서 pmd qualification을 decision tree로 정리	
	N74: produc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임상 관련 사항	
	포함	
	(3D printing PMD)	
	복잡한 구조의 신체용 MD 만드는데 유용	
	스캔-3D 모델 마련- plan-디자인-3D 프린트-수술의 절차로	
	진행	
	patient matched device vs. customized device	
	정의의 차이, imdrf 정의 이용	
	임상시험을 통해서 benefit-risk profile 파악 필요	
	산업계는 혁신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regulatory convergenc	IMDRF 특성상 아시아보다 남미, 아프리카 관심
	e & harmonization이 해답임을 강조	이 더 많아 보이기도 했는데, Convergence and
		Reliance 가 아시아 타 국가에 대한 적용이 되면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Panel Discussion]	
	질문: Reliance 뭔가. 특히, 저소득 및 개발도상국한테 있어서 reliance라는 것은? reliance를 어떻게 operation 하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브라질의 경우,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reliance program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일궈나감. 이후 산업계와 얘기를 했음. 국내/외 산업게와 얘기.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아직 시스템도 잘 마련되어있지않고, 리소스도 부족하지만 같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협업하는 것이 중요, 리소스가 어느정도 되는지 먼저 판단하고 그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필요. 미국 또한 리소스가 한계있음. 현명하게 쓰는 것이 필요	럽의 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허가에
	코멘트: 리소스, 전문가(전문성) 관련 질문과 연관된 코멘트 인데, 리뷰어마다 규정 이해/해석이 다르다 그러다보니 결 국 산업계가 나중에 헤매게 될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이 올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리소스랑 전문가(전문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성)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IMDRF 주요 목표인 convergence and reliance는 IMDRF 회원국의 의무(obligation)인 것으로 보였음.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제조업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조를 다지기 위해서는 초기진출 시장인 한국의 법제도가 장기적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convergence'라는 것이 거스를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임.
Regulatory toolbo xes to foster inn ovation		첫날은 전반적으로 세분화된 특정 주제를 다루 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risk based approach에 기반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가능한 주제 선정으로 보이고, 품질관리체계에서의 ISO134 85/MDSAP 인정, 생물학적 안전성 관련 risk base d approach 등은 올해 많은 convergence 보이고 있고, 이 부분이 재질 특이적인 Type II anodized titanium나 특정 의료기기 guidance (vertical standards) 등에도 고려하면 '한국만 요구한다'는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Global convergence and reliance에 대해: 개념은 훌륭하나,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다 는 lay out이 안 보이니, 좀 막막하게 느껴짐. 실 제 기업이 혜택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지 않을 까 싶음.
		벤치마킹할 규제 나라: PMDA에서 잠깐 foreign data 활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앞으로 수입 제품을 염두에 두고 같이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제품을 일본으로수출할 때 <-> 일본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다음 워크샵 주제 추천: MDR에서 DTx 검토 시 critical한 point가 clinical benefit에 대한 입증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워크샵이 있으면 좋겠음. 불면증 DTx를 예를 들자면 자가보고 불면 설문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지와 수면데이터 통한 효능 입증 외에 어떤 outcome measure가 추가로 필요한지. 이를 위해 어떤 추가 연구 또는 literature review가 필요한지에 대한 regulatory body + NB + 컨설팅 + 업체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음 RWE 활용에 대한 실제 사례에 관한 워크샵. Ken (FDA)가 언급한 대로 RWE의 개념이 각자 다다르고 unclear한 면이 많음 RWE의 정의 + 활용 방안에 대한 ideation 도출

붙임 4 제24차 이해당사자포럼 및 Flash Panel 산업계 내용 및 의견 정리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호주)	국가별 update 시 캐나다의 significant changes,
	의료기기 (사후) 감시 프로그램	system submission (software architecture 연관
	-22~24년 시판후 관리 강화 일환 프로그램	가능) 관련한 guidelines 제/개정은 더 복잡해지
	- 20년에 개발된 프로그램	는 의료기기 system architecture를 고려한 것으
	- AE 보고 강화	로 보이고, 이 부분은 indication/intended use 와
	- self assessment tool	연결외어 있기도 해서 현재 사용목적 기재 및 in
	- 현재 파일럿 진행 중	dication for use/intended use 부분에 대한 conve
IMDDE 최이그램		rgence. 이에 따른 Risk management 개념을 우
IMDRF 회원국별	point of care manufacturing	리 제도 운영에 녹아내야 전반적으로 balanced a
규제 업데이트	- TGA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준수하지않는 이들 제품	pproach as similar to other member countries가
	제조사 계속 관리/규제 예정	될 것임.
	- PoC 는 어떤 기기이며 누가 만드는지, 위험도, 관리방법,	결과적으로 보험과도 연계가 되기도 하는데 (일
	규제 방안 등 관련한 내용으로 23년 6월 심포지엄 개최	부 청중 질문 및 TGA focus) 이 부분은 식약처
		의 사용목적 기재 방법 (intended use/ indication
	유럽 MDR에 맞춰서 인허가 신청 접수 시스템 개선 및 alig	for use 별도 항목)과 이에 따른 품목별 등급 분
	n 추진중	류와도 관련과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이 감안되
	-> Audit Framework	어야 할 것 같음. 현재 MFDS 등급분류 방식 및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그 운영은 유럽의 risked based rules 보다 FDA l
		isting based (기기별 코드 및 intended use) 에
		가까워 보이지만 innovative technology or expan
		ded indication (de novo, borderline guidance) 실
	부작용 보고 의무	질적 적용이 임상자료와 연계되어 활성화 되지
	- 사망, 심각한 위해 등 신고의무	않은 것으로 보임.
	규제조화, 시판전/후 관련사항 국제적 협업 등 진행중	Risk-based approach가 적용되면 reasonably pra
		gmatic oversight while efficient use of resourcin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 중	g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IT 기능 사용해서 업무 효율성 넓히는 노력중 예. eIFU, UDI 등	
		각 국가별 update 에서, EU MDR 전환에 따른
		변경이 전세계적인 여파가 있어 보였고 변경허
	AE 보고 관련하여 병원 관리. private clinic은 국가 관리가	가 처리에 대한 부담이 산업계 뿐만 아니라 각
	안됨	국의 규제당국이 처리해야 하는 양이 늘어남에
	commission통해서 관리하려고 현재 협업중임	따른 우려를 Health Canada가 직접적으로 질문
	pharmaciest 역할 강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변화	을 하였지만 MedTech Europe 은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전환 연장에 따른 legacy devic
		es 를 어떻게 리뷰할 지에 따라 변경허가의 내
		용 (intended use/patient population, claims, stora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브라질)	ge condition) 에 따른 flow on effect 있을것으로
	메르코스 협정 국가들 사이에 일반의료기기 및 IVD 의료기	보이고, MDR related IFU (환자군. 적응증. 사용
	기 규제 강화 공동 노력 중	목적 rephrase) 변경이 대부분 축소임을 감안하
	임상조사 요건 개정 중	여 light review track 적용도 식약처의 효율적
	의료기기 시판전 승인 요건 관련 사항 개정: 신기술에 대한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듯함. 그리고
	정의 및 분류 체계 업데이트, 기타 다른 규정과의 통합 추	이 부분은 Reliance level 높인 것으로 강조도 가
	진 등 진행 중	능하지 않을까함.
	IVD 시판전 승인 요건 개정 및 강화	Convergence and reliance 측면에서 큰 근간이
	GMP certification database 홈페이지 통해서 검색 가능	되는 QMS 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RWE 등
	GMP 관련 파일이나 상황 등 다 추적 가능	PMS/PMV 가 주는 유효성을 감안하여 MDSAP의
		근간이 되는 ISO13485 인정에 기반한 (product q
	MDSAP 보고서 사용하여 GMP 서티 발행	uality throughout product lifecycle based on the
	17년부터 계속 GMP 서티 발행 수 증가 현재 60% 이상이	system, not by 'checking' thru inspection) in
	MDSAP으로 GMP 인증서 발행 받음	dustry capability 키우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할
	시판전 승인 reliance mechanism 구축	듯 함. 시간은 걸려도 일단 미국도 convergence
	MDSAP 포럼 10월에 개최 예정	쪽으로 가고 있으니 (pma 제외) 이것이 대세가
	전기사용의료기기	아닐까함.
	abbreviated process	
	- mdsap 국가 중에서 한 국가에서 허가받은 제품 브라질에	수입사의 product safety는 guidance 기반한 relia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인허가 신청 시, 신청 및 인허가 과정 간소화 하는 제도. 브라질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제출하면 빨리 인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용목적, 제조소 이런건 그대로 본다.	
	(캐나다) 여러 consultation 진행중 의료기기 중대변경 어떻게 해석할것인지에 대한 가이던스 초안 발간하여 관련하여 공개의견 수렴중. PCCP 관련 사항 포함 질문: PCCP ToC update 관련 사항 공개할것인가? PCCP와 ToC랑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할지, 어떤 식으로 넣어야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서 이부분은 현재 답하기 어려움 ML proposal이 safety 관련해서 어떤 benefit이 있나? 관련 국가와 협업중이고, safety 강화를 위한 노력중. 내가 담당 자가 아니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를 통해 알려주겠 다.	nce에 주안해서 인력 효용성도 도모하고, 국내 업체의 capability를 늘릴 수 있게 제조쪽의 syste mic approach (checklist 기반 감시보다 항시적인 design control system)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 력할 수 있게 식약처가 독려, 장기적 경제적 장 점 강조 해야하지 않을까 함. MDSAP을 통해서 국내 NB의 audit quality를 식 약처가 suveilance 하는 것도 유럽의 NB certific ation process와 부합하면서도 수출업체의 경쟁 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국내 제조 가 FDA approval 받기 힘든 큰 이유가 system에 대한 이해 및 practice 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대주제	내 용	산업계 의견
	(중국) 의료기기 분류체계 개정 추진 중 transparency 강화 중임을 강조	
	(EU)	
	IVDR 개정 진행 상황 공유. 타임라인 공유 MDR transiaionl period 진행상황 공유 EU priorities 23-24년 - EUDAMED, UDI, Nomenclature, Tertiary legislation: com mon specifiation/implementing Acts, Standards - MDCG 2022-14 position paper implementation 예정	
	The second of th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한국) 핵심 내용: 한국의 디지털의료기기법 소개	
	청중 질문: 디지털 법이 MD 법과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overlap 서로 되는건지? 아니면 시판승인 그리고 access to market (시판 이상의 개념 보험까지 포함되는) 그런건지? 이 둘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둘다인지?	
	기타 회원국 의 세부 내용은 회원국 발표 자료 참고	
Regulatory pathw ays and reliance 관련 산업계 의견	캐나다, 미국, 싱가폴, 브라질 등 혁신의료기기 사전허가, 신속심사, 사후관리 등 산업계가 주목하는 특별한 규제는?	(캐나다) 기존 regulatory framework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기술을 규제, 허가 할 수 있는 Advanced Therapeutic Products (ATPs) Pathway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 기술 혁신 속도에 규제 혁신 속도가 늦을 수도 있음으로 한국도 참고할만한 제도임
		(싱가포르) Immediate Registration Pathway for Standalone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Software and Mobile Applications — 2018년부터 시작된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에서 허가 받은 제품들을 immediate market access를 준다는게 매우 인상적이었음. 영미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언어를 쓰는 국가)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한국도 이 그룹에 들어가면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국제적 인정, 상호인정 등 관심 대상 국가는?	Pre-market development consultation이 인상적이었음. 미국의 Q-submission, 한국의 사전상담 제도, 그리고 독일의 Kick-off meeting & DiGA/DiPA consultation과도 비슷한 것으로 생각됨
	식약처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발표 내용에 Priority Review Scheme에 자세한 qualification criteria (e.g., the product falls under 1 of the 5 healthcare focus areas; designed & validated to meet unmet clinical needs)가 있는 것이 좋았음 (중국도 비슷한 내용 포함). 이는 사업전략 수립 시 어떤 질환군에 focus하면 좋을지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국내 DTx 산업계 의견	산업계의 관심대상 국가와 특정 규제는? DTx 관련하여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은? 특히, 어떤 점을 협력해 주길 원하는지? 해외 허가/승인/QMS/사후 감시 등 산업계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는 국가는? 식약처에 요청사항은?	DTx 산업에서 선호하는 나라들은 아래의 두 clarity가 있는 국가임 1) regulatory clarity (즉, DTx관련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들) 2) commercial / reimbursement clarity (i.e., DTx 수가 적용 방안 혹은 strong commerical model이 있는 나라들) ⇒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이 해당함. 위나라들 규제 기관 대응할때 DTx 업체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data portability 부분임 (즉, 상대나라에서 한국의 임상 데이터를 얼만큼 인정해줄건지를 의미). 싱가포르와 브라질 규제를 보면 규제 강국(예. 미국, 일본)한테는 문화적/인종적 차이가 있어도 좀 더 관대한 것 같고, 규제 약국들에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듯 함. 한국도 디지털(SaMD, AI, DTx)를 중심으로 한 발짝 더 규제 강국의 서열에 들어가길 바람.

대주제	내용	산업계 의견
차기 워크숍 주제 제안	다음 IMDRF 워크샵이나 회의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는?	Digital Therapeutics (DTx)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함. 이번 플래시 패널 같은 경우 DTx의 정의를 전혀 모르고 나온 패널리스트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다음에 DTx 주제로 세션을 마련할 때에는 패널 토의의 형식보다는 '발표+패널토의'형식으로 각 나라에서 어떻게 DTx를 규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허가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규제 당국들의 lessons learned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